##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78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민형배·박상혁·김문수

박지혜 • 이훈기 • 이재강

이정문 • 남인순 • 윤준병

박지원 · 김용민 · 김태년

윤후덕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,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.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.

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,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. 문제는,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긴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.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도 개선해야 합니다. 일반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에 접근하거나 검색하기 어렵습니다.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토록 하고자 합니다. 아울러,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

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려,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163조의2).

법률 제 호

###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3조의2제2항 중 "판결서는"을 "판결서는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제162조제4항·제5항 및 제163조"를 "제162조제4항 및 제163조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판결서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16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.
제3조(수수료에 관한 적용례) 제16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63조의2(판결서의 열람·복사)	제163조의2(판결서의 열람·복사)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	②		
의 대상이 되는 <u>판결서는</u> 대법	<u>판결서는 판결</u>		
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<u>선고 후 10일 이내에</u>		
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			
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			
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.	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
⑤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	⑤		
제162조제4항·제5항 및 제163	<u>제162조제4항 및 제163조</u>		
<u>조</u> 를 준용한다.			
<u>&lt;신 설&gt;</u>	⑥ 제1항에 따른 판결서의 열		
	람 및 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		
	를 무료로 한다.		
<u>⑥</u> (생 략)	<u>⑦</u> (현행 제6항과 같음)		